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122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구지윤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소외 C과 피고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9.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대전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전부를 소외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채무자 C이 수원회생법원 2023. 5. 24. 자 2022하단1803 파산폐지 및 2022하면180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채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면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불요증사실이다.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다.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도 예비적으로 덧붙여 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오현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J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08.25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820.2 분의 196.6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F 대 23820.2㎡ 끝.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 타여
신 정에
따 소유
권

2. C의 리스료 채무

가. 리스계약체결

: ㅏ 같
ㄱ 하는
;

— 리스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리스료
M/ 2020.03.17.	물티슈포장라인	36개월	160,000,000원/ 3,629,116원
N/ 2021.09.07.	물티슈포장라인	36개월	400,000,000원/ 7,835,578원

나. 리스계약 내용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상태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 리스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리스계약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이며,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리스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지), 제21조(계약해지시의 조치)를 원고와 약정하였습니다.

다. 연대보증

위2항 가호 원고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C은 리스이용자가 원고에게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라. 리스계약 해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2022. 7. 28.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마. 채무불이행

리스계약 해지로 리스이용자 및 C은 2022. 11. 16. 기준 금299,024,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 소결

C은 원고에게 2022. 11. 16. 기준 금299,024,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 C의 소유권이전등기

C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F에 있는 G아파트 O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리스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와 2022. 6. 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2022. 6. 29.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7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나. 피보전채권 성립

1).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원고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리스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위 리스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리스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C은 리스이용자회사의 대표로써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에게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살펴볼 때 원고의 채권은 원고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에서 C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B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4. 배당금 채권 양도 청구

, 이고

1 도하

.